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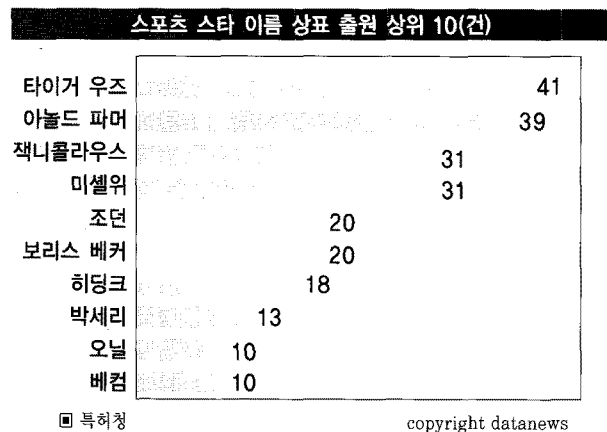
# Tiger Woods 상표 사례

법무법인 다래 / 이인종 변호사

‘TIGER WOODS’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날까? 아마도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그가 골프를 치는 사람이든 치지 않는 사람이든 ‘TIGER WOODS’ 라고 하면 ‘골프황제’ 로 불리고 있는 미국의 골프선수인 ‘TIGER WOODS’ 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생각이 ‘골프의 천재’ 라는 생각일 것이고 골프를 무척이나 잘 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골프선수인 ‘TIGER WOODS’ 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골프와 관련하여 좋은 모습으로 다가와 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유명한 스포츠 스타인 ‘TIGER WOODS’ 라는 이름을 내세워 ‘골프용품점’ 이나 ‘골프교실’ 등을 운영한다면, 사업이 잘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TIGER WOODS Enterprise S. A’ 사는 국내에서 상표 ‘TIGER WOODS’ 를 상표출원을 하였는데, 현재 출원공고이며 아마도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IGER WOODS’ 에 못지 않게 우리나라의 스포츠 스타도 많은데, 이들의 이름으로 상표출원을 하면 어떨까?



이와 관련하여 상표법은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타인의 유명한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인이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등의 성명이나 명칭, 초상 또는 예명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이 자기의 이름이나 예명을 직접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가능하며 그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유명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은 대부분 연예기획사(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들 연예기획사는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의 이름이나 예명의 사용과 관련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이 출원하는 경우에도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국내 유명한 스포츠 스타의 이름을 상표로 하여 상표등록 출원한 예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 예를 찾아보면, 박찬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인이 “박찬호 야구클럽”이라는 상표를 ‘야구공, 야구용 배트, 마스코트 인형’ 등에 사용하려고 상표출원한 바 있으나 등록이 거절되었으며, 박찬호 선수가 아닌 박찬호라는 사람이 “박찬호 감자탕”이라는 상표를 간 이식당등에 사용하려고 출원한 바 있으나 역시 거절되었다.

그 외에도 타인이 야구선수 ‘이승엽’의 이름과 같은 상표 “이승엽”을 의류판매대행업 등에 사용하려고 상표출원하였으나 거절되었으며,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가 자기의 이름을 딴 “박지성 축구교실”을 상표로 출원하여 심사대기 중인데 상표등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본 사례는 지식재산경영(2008) 저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